

볼리비아 자원개발제도 분석

삼성 회계법인/회계사

배홍기/이용우

I. 연구의 배경

1. 볼리비아 경제현황 및 자원현황

1) 경제현황

남미대륙 중서부에 위치한 볼리비아는 한반도 면적의 5배 크기로, 북쪽과 동쪽은 브라질, 남동쪽은 파라과이, 남쪽은 아르헨티나, 서쪽은 페루·칠레와 국경을 이루는 내륙국이다. 볼리비아는 다민족 국가(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라는 공식명칭이 말해 주듯이 케추아 원주민, 혼혈, 아이마라 원주민 및 유럽계 백인을 중심으로 한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볼리비아는 지리적으로 열대에 속하나, 고도에 따라 다양한 기후를 보인다. 인구는 2014년 기준으로 약 10.6백만명이며, 케추아족 30%, 메스티족 30%, 아이마라족 25%, 유럽계 백인 15%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주교신자가 95%를 차지하고, 스페인어, 케추아어, 아이마라어를 공식어로 사용한다. 정부와 국회가 있는 행정수도는 라파스(La Paz)로 볼리비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이다. 한편, 헌법상의 수도는 수크레(Sucre)이다.

볼리비아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은 2006년 최초로 원주민인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Evo Morales Ayma, 이하 모랄레스) 대통령의 등장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이전까지 정부는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및 세계은행 그룹(WorldBank Group) 등 국제원조기구들의 지원 아래 주로 정부의 규제완화와 개방을 취지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추구하였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까지도 볼리비아 경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소득분배구조 역시 악화되었다. 2006년 모랄레스 대통령의 집권은 국내 빈곤 상황이나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 볼리비아 지도¹⁾

모랄레스 정부는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과 경제·사회개발계획이라는 상위 국가개발전략 하에 ‘다민족’, ‘국가경제’, ‘자치’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특히 자원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자원에 대한 정부의 권한강화에 기반하여 창출된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정책을 강화하였다. 한편, 외교적 갈등을 무릅쓰고 에너지, 통신, 광산 등 전략산업 부문의 국유화를 추진해 왔다.

볼리비아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국내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며 초보적인 산업발전 수준 유지하고 있다. 천연가스와 원유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의 주요인으로서 전체 FDI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재정수입의 50%이상을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가격 변동이 경제전반과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볼리비아 정부는 최근 자원에 대한 국가 권한의 강화와 자원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이익의 재분배와 같은, 전략자원의 개발과 성장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볼리비아는 장기간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중남미 지역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거시경제적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6년 이래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의욕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함과 함께 볼리비아의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 해외근로자의 송금 확대 및 미국의 특혜관세 등의 영향이 크다.

1) <http://www.boliviabella.com/maps.htm>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2009년 성장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주변국들의 높은 경제 성장,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4~5%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불확실한 투자법규와 에너지, 통신, 광업 등 주요 분야를 차례로 국유화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성장률의 호조는 정부가 다양한 사회계층의 욕구를 반영하여 주로 인프라부문과 사회보호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확대재정정책을 수행한 데 기인한다. 지난 2014년 10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모랄레스 정부가 재집권함에 따라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공공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GDP 성장률은 2014년 5.6%를 기점으로 2018년까지 4% 내외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표 1]참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자본에 대한 엄격한 규제, 외국채재 볼리비아인 송금 하락추세, 사회 내 만연한 부패 및 취약한 사법제도 등은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또 볼리비아 경제가 크게 의존하는 탄화수소(hydrocarbon) 수출입의 불안 역시 불투명한 전망을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경제는 총체적으로 2000년대 후반 이후 2014년까지 특히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건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표 1 ■ 볼리비아 경제전망²⁾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질 GDP 성장률(%)	5.6	3.8	4.1	4.0	3.9
농업부문성장률(%)	4.0	3.8	3.8	4.0	3.8
소비자물가상승률(%) ¹⁾	6.1	6.4	5.6	5.2	5.7
상품수출(십억 달러)	12.4	13.4	14.3	15.5	16.6
상품수입(십억 달러)	9.8	10.9	11.9	13.0	14.1
경상수지(십억 달러)	0.9	0.7	0.6	0.7	1.0
경상수지(GDP 대비 %)	2.7	1.9	1.4	1.6	2.1
외채(십억 달러) ²⁾	8.1	8.3	8.8	9.1	9.4

주: 1) 연평균 기준
2) 연말 기준

2)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4). P. 11.

표 2 | 볼리비아 일반사항

구분		내용
일반	위 치	남미대륙 중부, 브라질 남서쪽
	면 적	1,099천 km ² (한반도의 5배)
	수 도	La Paz
	기 후	열대 (저지대), 고산 (고지대)
	인 구	10.6백만 명 ('14)
	민 족	케추아족 (30%), 메스티조 (30%), 아이마라족 (25%), 백인 (15%)
	언 어	스페인어 (공용어, 61%), 케추아어 (공용어, 21%), 아이마라어 (공용어, 15%)
	종 교	가톨릭 (95%), 개신교 (5%)
정치	독립일	1825. 8. 6. (스페인)
	정치 체제	공화제 (대통령중심제)
	국가 원수	Juan Evo Morales 대통령
	의 회	양원제 (상원 36석, 하원 130석)
	주요 정당	사회운동당 (MAS), 국가집합당 (PPB-CN), 국민통합당 (UN)
경제	G D P	341억 달러 ('14)
	1인당GDP	3,031 달러 ('14)
	화폐 단위	Boliviano (Bs)
	회계 연도	1. 1.~12. 31.
	산업 구조	('13) 서비스업 52%, 제조업 39%, 농업 9%
	주요수출품	('13) 천연가스, 아연, 원유, 대두
	주요수입품	('13) 석유제품, 제지, 항공수송기, 자동차, 살충제
	주요부존자원	주석, 납, 아연, 천연가스
	국제기구가입	UN, IMF, IBRD, IFC, IDA, OAS, IDB, WTO 등
국제 신인도	OECD 5등급, S&P BB, Moody's Ba3, Fitch BB-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표 3 | 볼리비아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e	2015 ^f
국내 경제	GDP	억달러	241	273	308	341	373
	1인당 GDP	달러	2,269	2,517	2,793	3,031	3,256
	경제성장률	%	5.2	5.2	6.8	5.2	5.0
	재정수지/GDP		0.8	1.8	0.7	-0.4	0.1
	소비자물가상승률	%	9.9	4.5	5.7	6.0	5.3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e	2015 ^f
대외거래	환율 (달러당, 연중)	Bs	7.0	7.0	7.0	7.0	7.0
	경상수지	백만달러	77	2,259	1,012	874	1,050
	경상수지/GDP	%	0.3	8.3	3.3	2.6	2.8
	상품수지	백만달러	1,049	3,416	3,132	2,822	2,806
	수출	"	8,175	11,110	11,507	12,335	13,188
	수입	"	7,126	7,694	8,375	9,513	10,381
	서비스수지	"	-703	-914	-995	-1,044	-1,095
	외환보유액	"	9,911	11,659	12,783	13,004	..
외채현황	정부채무/GDP	%	34.7	33.4	32.5	29.7	27.8
	국내정부채무/GDP	"	19.9	17.7	16.1	14.5	13.3
	해외정부채무/GDP	"	14.8	15.7	16.4	15.2	14.5
	총외채잔액	백만달러	6,464	6,898	7,579	7,918	8,260
	총외채잔액/GDP	%	26.8	25.3	25.4	23.8	22.7
	단기외채	백만달러	635	720	740	758	..
	외채상환액/총수출	%	4.2	7.8	11.9	5.9	5.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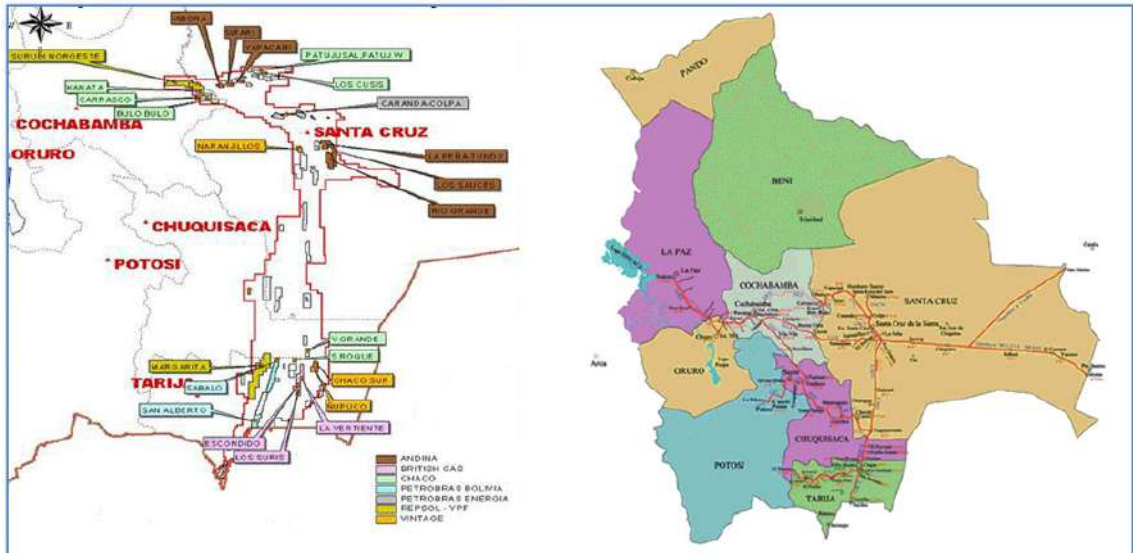
2) 자원현황

(1) 천연가스/석유(탄화수소(Hydrocarbons))

1996년 이래로 볼리비아는 정부주도로 탄화수소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매장지역은 주로 남부 안데스 및 고원 지역이다. 최근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잠재 매장량은 60 TCF(Trillion cubic feet) 수준이며, 원유매장량은 25억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

볼리비아 남부 아르헨티나와의 국경을 접한 타리하(Tarija) 주(85%)에 가장 많은 가스전이 있으며, 산타크루스(Santa Cruz) 주(10.6%), 코차밤바(Cochabamba) 주(2.5%)의 순서로 매장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마르가리타(Margarita), 이파티(Ipati), 산 알베르토(San Alberto) 및 사바로(Sabalo)의 가스전을 들 수 있다.

3) Gas&Desarrollo 2014, YPFB p.34



■ 그림 2 ■ 볼리비아 탄화수소 개발지역 및 주요 천연가스 Pipeline⁴⁾

1999년 이래로 볼리비아는 브라질과의 20년 기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천연가스를 브라질에 수출하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USD 18억불이 투입된, 3,000km의 길이에 달하는 남아메리카대륙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2006년 천연가스의 국유화 선언 이후 정부 부처인 탄화수소부와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YPFB: Yacimientos Petroliferos Fiscales Bolivianos)에서 천연가스 산업에 관한 정책 및 산업에 대한 일련의 주요 활동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광물

1970년대까지 은, 주석, 안티몬 등의 주요 광물 자원의 수출이 경제성장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였다. 이후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로 인하여 그 위세가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전형적으로 볼리비아는 광물자원 의존도가 높다.

볼리비아의 주요 광물 매장량은 다음과 같다.

4) YPFB

표 4 | 볼리비아 광물매장량

광종	단위	볼리비아(A)	세계(B)	A/B(%)	세계순위
비스무스	톤	10,000	320,000	3.13	3위
인티모니	톤	310,000	1,800,000	17.22	3위
텅스텐	톤	53,000	3,300,000	1.6	7위
주석	톤	400,000	4,800,000	8.34	4위
연	천톤	1,600	87,000	1.84	9위
은	톤	22,000	530,000	4.15	9위
아연	천톤	4,500	230,000	1.96	9위

주) 매장량은 현 가격 수준에서 경제성이 있는 광량인 Reserve 기준
 ※ 자료원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5

미국 지질조사소(USGS, 2013) 기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은 4,000만톤으로 볼리비아 900만톤, 칠레 750만톤, 아르헨티나 650만톤, 미국 550만톤, 중국 540만톤 등이다. 볼리비아의 리튬 매장량 900만톤 중 상업생산이 가능한 매장량은 540~550 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우니 소금호수(Salar Salmuera de Uyuni), 코이빠사 소금호수(Salar Salmuera de Coipasa)의 17,000km² 지역에 걸쳐 매장 되어 있다. 해당 지역에는 리튬 외에도 붕소, 칼륨, 마그네슘 등이 매장되어 있다.

볼리비아 광물 생산량의 38%는 미주대륙으로, 이와 비슷한 규모의 광물 생산량은 아시아로, 20%는 유럽으로, 4%는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 대륙으로 수출되며, 총 55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2. 볼리비아 자원개발 관련 주요 정책 개요

1) 탄화수소(천연가스 및 원유) 자원개발 관련 법규 및 정책

(1) 탄화수소 자원개발 관련 법규

볼리비아는 탄화수소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헌법, 탄화수소법(Law No. 3058) 및 투자촉진법(Law No. 516), 세법 등의 주요 법제를 통해 그 소유와 개발 및 조세, 투자 인센티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탄화수소 자원정책

볼리비아의 탄화수소 자원정책은 여타 남미지역 국가들의 사례처럼 국영화와 민영화의 사이를 오가며 국익증진과 탄화수소 사업발전의 목표를 추구해 왔다.

2006년 취임한 모랄레스 대통령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과 정반대의 자원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탄화수소 국유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취임과 동시에 최고행정명령(Supreme Decree) 28701을 제정·선포하여 이 분야의 전면적 국유화와 기존의 로열티(18%)와 탄화수소직접세(IDH, 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 (32%) 이외에 공동생산물에 대한 YPFB 지분을 신설하는 등의 세금인상을 시행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천연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을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재투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년 이상 투자 및 생산하는 가스산업 특성상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하지만, 계약조건 변경 등으로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기타 볼리비아 국내시장의 가스 가격의 경우 기존에는 3개월마다 변동하였으나, 현재는 정부가 수시로 통제하여 이윤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YPFB가 생산물 판매를 전담하면서 수출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 이익 증가에 한계가 존재한다.

2) 광물자원개발 관련 법규 및 정책

(1) 광물자원개발 관련 법규

볼리비아는 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헌법, 광업금속법(금속 및 광물 자원)(Law No. 535) 및 투자촉진법(Law No. 516) 등의 주요 법제를 통해 소유와 개발 및 조세, 투자인센티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광물자원정책

볼리비아는 전통적 광업국가로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광업분야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식민지 시대에는 은 생산의 중심지로서 남미경제의 핵심역할을 담당했으며, 독립 이후에는 주석 생산이 볼리비아 경제를 지탱하였다. 그러나 은과 주석 모두 소수에게 그 경제이익이 독점됨으로써 국가 정치·경제 불안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2006년에 집권한 모랄레스 정부는 소수에게 집중된 경제이익의 독점을 완화하고 광업분야에서 정부 역할을 확대하여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자원산업을 국영화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광물자원에서부터 얻어지는 수입을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재투자하는 자원민족주주의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한편, 2014년 5월 광업금속법(Law No. 535)가 제정되었는데, 이는 2009년 헌법의 틀에 맞추기 위해 기존의 광업법(Law No. 1777)을 개정한 법안이다. 이법은 민간투자 증가를 중시하며, 헌법의 정신과 국가경제 강화의 목표에 맞춘 광업분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광업활동이 해당 지역발전에 실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연구의 필요성

볼리비아는 탄화수소(천연가스과 원유) 외에도 철, 구리, 아연, 리튬 등의 핵심 광종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 확보를 위한 대상지역으로서 볼리비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볼리비아가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험부담이 큰 이유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투자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2006년 이후 볼리비아의 급격한 정치지형 변화는 이 지역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필수 이해 사항인 자원 소유권 및 세법 관련 법제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볼리비아는 투명성의 부족, 복잡하고 느린 법률절차, 과도기적인 규제제도 등으로 투자활동이 쉽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볼리비아는 현재 헌법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시행법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시행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모랄레스 대통령 탄생과 함께 자원개발 법제가 개정되고 있는 볼리비아 자원개발 관련 법제를 분석한다. 한편, 볼리비아 일반 투자환경을 검토하여 실제 투자의사 결정시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해 본다. 이는 해당 국가의 자원개발 법제 및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투자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I. 볼리비아 투자환경

볼리비아에서는 분쟁을 중재하는 법률 시스템이 늦어질 수 있고, 볼리비아 정부가 제3국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전 실사(due diligence)를 주의 깊게 수행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볼리비아 정부와 직접 협상을 해야 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개방 및 제한

1)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입장

일반적으로 볼리비아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개방되어있다. 2014년 투자촉진법은 내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공공투자가 내/외국인의 민간투자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 정부가 어떤 분야가 민간투자를 필요로 하는 부분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아직 미정인 상태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폐기했는데, 이 협정 폐지는 2012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같은 폐기시점에 존재한 투자들은 기존의 투자협약안에 의해 향후 10년간 보호될 수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관련 법/규제

2009년 개정 헌법의 제320조에서 볼리비아는 더 이상 국제중재기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들에 영향을 미쳤다. 분쟁 발생시 양당사자는 더 이상 국제 재판소를 통한 문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시행법안이 부족하여, 실제 시행에 대한 법률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볼리비아 헌법의 제320조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I. 볼리비아인의 투자는 외국인투자에 우선한다.
- II. 모든 외국인 투자는 볼리비아의 사법부, 법 그리고 당국의 영향을 받으며, 예외사항은 인정되지 않고, 더 유리한 처우를 받기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Ⅲ. 외국정부 및 외국기업과의 경제적 관계는 독립적이고 상호 존중이래 맺어진다. 볼리비아인을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닌 외국정부 및 외국기업에 대해 더 우호적인 혜택을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 Ⅳ. 정부는 국내 경제 정책을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지방행정부, 은행 또는 볼리비아인과 외국 금융기관, 다국적 기업 등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Ⅴ. 공공정책은 볼리비아에서 생산된 제품의 내수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다.

헌법 제262조에서는 국경부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경으로부터 50km내 지역은 국경보호지역을 구성한다. 모든 외국인, 개인 또는 회사들은 직간접적으로 해당 지역에 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수자원, 토지 및 하층토에 대하여 정부의 입법기관에서 2/3이상 승인한 법에서 해당 지역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재산권도 가질 수 없다.”

이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재산권 또는 소유권은 어떠한 보상도 없이 국가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다.

볼리비아 사법시스템의 대외적 목표 중 하나는 계약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법부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관련 업무 진행이 늦어지고, 부정부패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

투자자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0년의 마르셀로의 반부패법(Marcelo Quiroga Anti-Corruption Law)은 기업 및 관련회사는 볼리비아와의 계약 위반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있도록 하였고, 동법이 소급적용 될 수 있게 하였다.

외국인들은 볼리비아 내국민 보다 해외로의 도피 위험이 높다고 여겨지며, 사전심리절차상 감금대신에 보석형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 볼리비아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볼리비아의 인권보고서를 통해 사법시스템, 노동권 및 다른 주요 이슈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외국인의 운영에 대한 제한

볼리비아 헌법은 모든 탄화수소자원이 볼리비아국민의 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탐사, 개발 및 산업화, 운송 및 판매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48조와 제351조). 국영석유회사(YFPB,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처럼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탄화수소의 운송 및 판매를 관리하고 정부기관에 의해 설정된 가격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YPFB는 탄화수소사업 운영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산품을 YPFB에 이전하고 YPFB에게 휘발유, 디젤 및 LPG를 주유소에 배급하는 권리를 이양하는 새로운 계약을 요구한 2006년 정부의 조치로 인해 이익을 내고 있다.

이 법은 YPFB가 자국 및 외국인 투자자, 외국계기업 등 탄화수소 및 부산물의 개발 및 거래를 원하는 이들과 정해진 기간 동안 조인트벤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제366조)은 또한 볼리비아를 대표하는 탄화수소 생산과정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당국, 사법 및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원 또는 외국사법기관 결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제중재 및 외교적 노력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에 따르면 어떠한 양보나 계약도 천연자원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으로 넘길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신 이 같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임시 권한은 관련 부처(광업, 수자원, 환경, 공공업무 등)에서 부여될 수 있다.

4) 외국인직접투자의 감독

새로운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실제 투자가 실행되는 분야와 관련된 부처에게 감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업금속부 및 광업행정청(AJAM)이 모든 공적 사적 광산투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각각의 부처는 인센티브 목표에 대한 산업의 준수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5) 독점규제법

볼리비아는 2009년 개정헌법 제314조에서 민간 독점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2009년 볼리비아 정부는 사기업을 감독하고 관리할 부서를 신설했다. 해당 부서는 자유 경쟁 및 무역을 감독, 촉진, 보호하며, 운영 메커니즘 및 사회적 사업 및 기업의 자발적 책임 이행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산업 내 기업의 구조조정 및 감독, 법적 금융적 개선, 기관의 운영 효율성, 투명성,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수행한다.

6) 투자 현황

GDP대비 투자금액 비율은 현재 16%로 매우 낮은 편이다. 남아메리카의 평균 투자 비율은 20%이고,

콜롬비아, 칠레 및 페루에서는 22%에 이르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민간투자에서 공적투자자로 변화하고 있으며, 2006년 국유화가 시작된 이후 변화된 사업환경으로 인해 투자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내국/외국인투자를 포함한 민간투자는 평균 GDP 대비 7.5%를 기록했고, 전년도에는 11%를 초과했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적투자는 크게 성장했으며 연평균 투자액이 GDP의 10%에 도달하였다. 2006년 이전 공적 투자는 GDP의 6%수준에 그쳤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천연자원, 특히 탄화수소 및 광산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FDI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 속에서 정부는 투자촉진법을 2014년에 시행하였으며, 이는 각 부처에서 해당 산업의 구체적인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온 case는 없다. 이 법안에서는 분쟁해결에 대해 별도의 법안에서 명문화시킬 예정이다.

표 5 | 볼리비아 투자환경 관련 지표⁵⁾

구분	연도	지표 순위
TI 부패인식도	2014	103 / 174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세계은행 발표)	2015	157 / 189
글로벌 혁신지수	2014	111 / 143
세계은행 1인당 국민총소득(GNI)	2013	USD 2,550

출처: MM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Country Scorecard)

볼리비아에 대한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평가결과는 복잡하다. 볼리비아는 규제의 질, 경제 정체성, 대출 용이성, 경제적 자유 측면에서 회사설립과 관련해서 적색 등급(볼리비아 내에서 사업할 것을 추천할 정도로 좋지는 않음)을 받았다. 투자 관련 인적 지표에 대해서는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도, 아동 건강 수준, 법률 및 부정부패의 통제에 대한 투자 부문에서 모두 적색 등급을 받았다.

2. 환전 및 송금제도

1) 외국환 교환

볼리비아 은행과 환전소에서 통화는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하다. 공식적인 환전 시스템은 크롤링 페그

5) Bolivia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2015 U.S. Department of State

(Incomplete crawling Peg)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 아래에서 환율은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중에게 공표되지 않는 세부적인 재조정과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달러를 사고 팔 때, 양자간 환율 차이는 약 10 basis point(0.1%)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법(제393조, 2013년)은 외국환 헷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은행이 외국환의 계좌를 유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미국달러 표시 잔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체 잔액의 20% 미만 수준이다. 볼리비아 법은 현재 12.5%의 원천징수를 통해 이익의 환수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2009년 헌법 제351조 2항은 볼리비아내 천연자원에서 비롯한 이익의 재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구체적 시행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모든 은행이 미국 달러로 자금을 이체할 때 자금이체세금(Financial Transaction Tax, ITF) 0.3%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볼리비아에서 유출되는 미국달러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볼리비아로 유입되는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은행 이체금액이 미화 10,000달러(1회 또는 3일 연속해서)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게다가 볼리비아로 유입/유출되는 미화 10,000 달러 이상의 모든 기축통화는 관세청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미화 50,000달러에서 500,000 달러까지의 금액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5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재경부(Ministry Economy and Public Finance)의 승인이 필요하다.

2) 송금 규정

볼리비아 정부는 송금 규정이 있는데, 볼리비아에서 다른 나라로 이루어지는 모든 송금은 1회에 미화 2,500달러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거래 횟수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 볼리비아로 유입/유출되는 송금의 규모는 지난 5년간 눈에 띄게 증가해왔으며 중앙은행 및 은행업 감독자는 신규 규제방안을 대해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론적으로 환전가능하고 협상 가능한 수단을 이용한 법률적 시장을 통해 송금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볼리비아 내에서 이 같은 금융 수단의 이용 가능성은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 정부는 주로 볼리비아 화폐로 채권을 발행하며 주요 회사채 역시 볼리비아 화폐로 발행된다.

볼리비아는 GAFILAT(Financial Action Task Force of Latin America, GAFILAT)의 회원이다. GAFILAT는 자금세탁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국제적인 전략의 실행 및 개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2011년 11월 이후 볼리비아는 공식적으로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있고 인위적인 환율조정(currency manipulation)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3. 수용(Expropriation) 및 보상

볼리비아 헌법은 정부가 공익 용도의 경우나 사회적 목적(제57조)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자산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이 사회적 목적은 공익 및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최대의 생산력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수행 및 개발하는 지속 가능한 토지의 사용으로 알려져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각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토지의 사회적 기능, 탈세, 또는 대규모 경작지의 보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수용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헌법 제401조).

정부의 필요성에 의한 수용으로 여겨지거나, 도로 개통이나 전력망 공급과 같은 공익을 위한 경우, 보상금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규정 위배에 의한 경우 볼리비아 정부는 국가로의 토지 소유권 환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006년에서 2014년 사이에 볼리비아 정부는 1990년대에 사유화된 기업들의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모든 탄화수소, 운송 및 판매 회사를 국유화 하였고 전력 산업의 주요 회사,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회사, 주철 제철소 및 시멘트회사를 국유화 했다. 이 회사들의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부는 사적 지분을 정부에 팔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판매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일부 기업들은 국제중재법원에 기소한 상태이다.

4. 분쟁 중재

1) 법률시스템, 파산, 국제 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

재산 및 계약상 권리는 볼리비아 자국 법원에 의해 존중되지만 사법절차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정치적 영향 및 부정부패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볼리비아의 상법(Law No. 14379, 1977년)은 상업활동에 대한 일반 지침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헌법은 국제법 및 국제조약에 우선하며(제410조), 국가는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갈등 해결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 파산(Bankruptcy)

파산의 경우 회사 청산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기간은 약 20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볼리비아 상법은 3가지 파산유형을 언급하고 있다. (제1654조)

1. No Fault Bankruptcy - 회사 오너가 회사의 지불불능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2. At-Fault Bankruptcy - 회사오너가 회사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법적/비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3. Bankruptcy due to Fraud - 회사오너가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고 한 경우

만약 회사가 파산을 선언하면, 회사는 직원의 임금을 다른 어떤 의무보다 우선해서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파산상태인 외국기업으로부터 임금 회수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책임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소송으로도 갈 수 있다.

3) 국제중재

보통 볼리비아 정부와 투자자들 사이의 모든 분야의 투자계약은 국제중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볼리비아는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과 같은 국제협약 및 외국의 판결을 존중하고, 관련된 대법원의 결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국제중재기구의 이용 등을 제한하는 2009년 헌법(제320조와 제366조)과 상충된다. 2009년 헌법은 모든 양자간 투자협정은 새로운 헌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2014년 5월 발효된 투자촉진법(Law No.516)에서는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3개월내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으나, 아직 관련 규정은 미정인 상태이다.

2007년 11월 볼리비아는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를 탈퇴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2010년 8월에는 볼리비아의 법무부(Legal Defense of the State)는 볼리비아정부와 칠레회사인 Quiborax 및 이탈리아 회사인 Euro Telcom과의 분쟁에 대한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볼리비아 정부는 2010년 최고행정명령(Supreme Decree) 692에 의거해서 진행된 국유화의 보상으로 Euro Telcom에 지급하라는 1억달러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했다. 2014년에는 볼리비아 내 최대 발전회사인 Guaracachi

를 소유했던 영국회사가 볼리비아 정부에 대해 배상금 41백만 달러의 지급 중재안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2014년 인도회사는 철광석 개발에 대한 갈등과 관련하여 22.5백만 달러의 국제 중재안에 대해 승소하기도 했다.

4) 분쟁 해결 기간

기업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국제중재기구를 이용하기 전에 정부와의 갈등 해결을 선택하기 때문에 국제 재판소에서의 문제 해결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어떤 Case에서는 국제 중재 시스템을 통한 갈등 해결 및 정부의 보상금 지급까지 7년이 걸린 사례가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중재 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약 1~2년 정도 걸린다.

5. 투자 인센티브 및 영업관련 요구사항

1) 투자 인센티브

2014년 투자촉진법 제14조는 볼리비아 내 영업중인 외국기업은 볼리비아 근로자 및 관계기관에 기술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볼리비아인들이 운영, 관리, 임원으로서 일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볼리비아에 투자를 실시하는 회사들은 기계 장비를 해당 분야와 관련된 대학교 및 기술학교에 기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의 공공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찾기 위해 연구 활동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투자촉진법 제21조는 정부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특정 분야의 투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2) 업무 요구사항

볼리비아 노동법은 볼리비아 내에 활동하는 기업의 외국 노동자를 전체 인력의 15%로 제한하며, 이 같은 외국 근로자의 채용은 기술직에 제한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든 볼리비아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볼리비아 내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 비자가 필요하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는 볼리

비아 연금 시스템의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다(연금법 제104조 1항).

대법원은 자국 내에서의 조달에 우선순위를 둔 최고행정명령(Supreme Decree) 27328을 통해 국가 및 각 지역 관청 수준들의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만약 볼리비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필요한 경우, 구매 결정은 시장가격에 기반해서 결정된다.

2014년 투자촉진법 제14조에서는 볼리비아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산업 프로세스 및 공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에 투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규제시스템의 투명성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법률과 2009년 헌법 상의 보장내역과의 불일치는 정책간의 법률적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해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환경규제 역시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 “사전 협의”를 요구함에 따라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이는 공공 사업부문뿐 만 아니라 모든 천연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관련 면허의 발급 절차는 그 속도가 매우 느릴 뿐만 아니라 부패에 노출되어 있다.

2010년에는 새로운 연금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는 회사의 급여에 대한 부담 비율을 1.71%에서 4.71%로 증가시켰다.

정통적 관료주의 하에서 진행 절차는 매우 길며, 이를 관리하고 준수해가는 것이 어려워서 간소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볼리비아에서 새로운 회사 등록의 경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절차의 완료까지 영업 일 기준 2~4일로 상대적으로 신속한 편이다.

헌법 제308조는 정부는 경제와 사회발전, 그리고 나라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힘에 공헌하는 민간 투자사업들(Private initiatives)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헌법은 자유로운 사업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사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7.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12년 10월 통과된 새로운 Mother Earth법(Supreme Decree 71 및 Law No. 300)은 공익, 조화, 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 환경부처 및 수자원부처는 이 법의 집행에 대해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법의 집행 및 이를 실행할 기관의 설립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비록 이 법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행을 강조하는 볼리비아지만, 정부는 현재 이를 실행하는 기업에 대해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09년 볼리비아 정부는 사회단체를 포함한 감독기관을 재조직하고, 최고행정명령(Supreme Decree) 71에 의거하여 감독 및 사회통제부처(Authorities of Supervision and Social Control)를 설립하였다. 이 새로운 조직은 정보통신 및 운송, 수자원 및 보건, 삼림 및 토지, 연금, 전기 그리고 기업들을 관리 감독한다.

각 분야는 감독업무를 부여 받은 감독자와 사회관리조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영업활동에 대한 감사를 할 권리, 재무적 자료공개 및 영업관리 결정에 대한 조사내용까지 공공에 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교육 및 훈련에서부터 기술 홍보, 공정한 노동시장까지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각 산업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 계획을 수립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업과 임업 분야로서 광업 회사들은 교육, 인프라 및 환경 이슈에 집중하는 파트너십을 지역 사회와 구축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들은 과거보다 사회적책임 이행 사례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해도를 갖게 되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 라인

볼리비아 정부는 회사들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 라인⁶⁾을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

6)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국 정부들의 공통된 인식하에 탄생한 권고안. 이는 인권에서부터 노사관계, 환경, 정보공개, 부패와 조세 등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함.

8. 노동시장

대략 2/3의 볼리비아 국민이 경제활동인구로 알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60~65%의 근로자가 계약상 고용관계의 종료를 보장하지 않는 비공식적 경제에 소속되어 있다⁷⁾.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및 높은 문맹 수준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한계를 가져오고 있으며, 임금수준은 낮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숙련 노동자들은 손쉽게 찾을 수 있으나, 숙련된 노동자들은 부족한 상황이다.

2009년 헌법은 불법적인 해고를 금지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제49조3항, 제50조). 볼리비아 노동법은 단결권 및 단체를 조직할 권리 및 단체로서 협상할 권리를 보장해주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노동조합을 보유하고 있고 거의 모든 조합이 볼리비아노동자연맹(COB, Confederation of Bolivian Workers)에 소속되어 있다.

관련 규제 및 법적 조항들은 단결의 자유, 파업할 권리, 단체를 조직할 권리 및 단체로서 협상할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 법은 노조에 대한 노조차별을 금지하고 노조 활동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을 규정하고 있다. 법은 정부의 승인 없이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자들이 정부 및 회사 사무실을 평화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어떠한 근로자도 노조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총파업이나 연대파업 행위도 보장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20명 이상이 고용되어있는 어떠한 민간회사에서도 노조를 조직할 수 있지만 최소 50%이상이 되어야 노조를 형성할 수 있다. 정부가 노조를 해산시킬 때는 행정규칙에 의해야 한다.

법은 또한 노조 임원들이 볼리비아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몇몇 공무원들(교사, 운송업 종사자, 보건업 종사자)는 법적으로 노조화하고 있고, 별도의 제재 없이 Bolivian Workers' Union의 멤버로서 참여 하고 있다.

국가 노동 법원은 반노조 차별행위에 대한 항의들을 조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결하는데 일년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7) Bolivia Company Laws and Regulations Handbook. Global Investment Center, USA p.241

IV. 자원개발 관련 주요기관 및 기능

1. 탄화수소에너지부(Ministerio de Hidrocarburo y Energia)

탄화수소에너지부는 정부 행정기관으로 탄화수소 자원 및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법규, 행정 및 감사와 탄화수소 자원 개발 시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전략 수립 및 탄화수소 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탄화수소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탄화수소부는 탄화수소에 대한 국가정책의 실행 진흥 및 감독기관으로

- a) 국가 탄화수소 정책 수립, 평가 및 관리
- b) 탄화수소법의 집행과 탄화수소 정책 실행을 위한 관할 조직의 규칙 제정
- c) 탄화수소 자원에 대한 법과 규칙 준수 감독
- d) 탄화수소법에 명시된 로열티, 보상, 참여에 대한 지불액의 가격 결정
- e)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정책 수립
- f) 탄화수소 판매를 위한 수출정책 수립
- g) 탄화수소법에 의거한 기타 다른 권한 준수 등의 권한을 갖는다.

실제 계약 체결과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으나, 정부 조직으로서 볼리비아의 탄화수소 자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의 이용 및 국내 에너지 수급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국립탄화수소청 (La Agencia Nacional de Hidrocarburos)

국립탄화수소청은 탄화수소법(Law No. 3058)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인, 법인, 공인, 개인 및 볼리비아 국민이나 외국인 등을 막론하고, 탄화수소 및 부속물 관련 생산, 개발 등 일련의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에 대한 규제, 관리, 감독을 담당한다.

또한 YPF가 담당하는 석유계약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시행하는 등 YPFB 활동들에

대한 감독을 그 주요 업무로 한다. 한편, 탄화수소 관련 세금 징수에 대한 감독 및 라이선스 취득 및 인가에 대한 업무도 담당한다.

3.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YPFB: 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YPFB)는 탄화수소법(Law No. 3058)을 통하여 정부조직인 탄화수소에너지부 산하의, 공적 권력을 갖는 독립된 국영회사로 재건되었다.

탄화수소법 제22조에 따르면, YPFB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국영기업으로서 YPFB는 탄화수소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담당하며, 탄화수소법에 명시된 일련의 모든 생산활동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b) 탄화수소법에 명시된 계약의 협상, 관련 계약 관리.
- c) 매장지에 피해 없이 생산을 극대화 시키는 탐사, 채굴활동 감독
- d) 세금, 로열티 및 지분분배를 위해 탄화수소 생산물의 양과 질 감독
- e) 천연가스 수출 담당, 판매 및 관리자의 역할
- f) 탄화수소 탐사, 채굴 활동과 생산과 관련한 그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합작회사 구성 협의

YPFB의 주요 업무로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화수소 생산 증가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탄화수소 산업에 대한 생산, 분배 등의 계약 체결 등이 있다.

YPFB는 탄화수소와 그와 관련된 부속물들의 국내 수급시장 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도시 및 농촌사회의 가스 사용에 대한 적용 범위확대에 노력을 가한다. 이러한 업무 외에도 가장 중요하게는 천연가스의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 활동과 산업과 및 상업화의 중심 역할을 진행한다. YPFB 산하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탄화수소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탐사, 채굴, 정제, 수송, 보관 및 분배에 관한 일련의 활동들을 하고 있다.

4. 광업금속부(Ministerio de Minería y Metalurgia)

광업금속부(Ministerio de Minería y Metalurgia)는 광업관련 정부기관으로 광물 및 금속자원에

대한 정책, 법규, 행정 및 감사를 담당한다. 한편, 광산개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전전략 수립 및 광업협동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광업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실제 광산을 개발하고 합작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상부조직으로서 볼리비아의 광물과 금속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광업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광업금속부는 광업발전을 선도하며, 투명성, 기술능력 및 사회적 약속, 창의성 및 환경에 대한 존중을 목표로 한다. 광업금속부는 광업활동과 관련한 일련의 모든 행위에 대한 규제, 내규 및 법령 제정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한다.

5. 광업행정청(AJAM: Autoridad Jurisdiccional Administrativa Minera)

볼리비아 광업행정청(AJAM)은 광업금속법(Law No. 535) 제40조 등에 따라 광업활동 관리 및 감독, 기업들의 광업활동 중 광산 및 광구 관리에 대한 감독한다. 한편,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의 광업활동 광산감독청 총괄하는 조직이다.

광업행정청(AJAM)은 신 광업금속법을 통하여 광업활동에 대한 사법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행정적인 면의 제도적 통합제로 거듭나고 있다.

6. 볼리비아 국영광업회사(COMIBOL: Corporacion Minera de Bolivia)

볼리비아 국영광업회사(COMIBOL)는 국영기업으로 독립 조직이며 광업금속부 산하에 속해 있다. 1952년 혁명 이후 대규모 주식 광산의 국유화와 국영광업공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된 COMIBOL의 역사는 1985년 민영화 이후 다시 재국유화되는 등 국가의 정치변동에 따라 회사의 운명도 변화되었다. 국가 경제발전의 주 수출항목으로 광물생산에 주력했으나, 2006년 중반까지 COMIBOL의 주된 기능은 광산 개발에 있어 합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2006년 모랄레스 정부가 구성되고, 2007년 7월 31일 3720법을 통해 국가 광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실제 광구개발 및 광업권을 획득함에 있어 실질적인 기업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된다. COMIBOL은 합작회사 구성시 최소 지분 51%를 가지며, 볼리비아 국내 기업 및

해외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를 갖는다.

COMIBOL은 광업활동에 있어 국영기업으로 계약체결, 생산업무 및 개발과 판매까지 모든 부문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V. 자원개발관련 주요 법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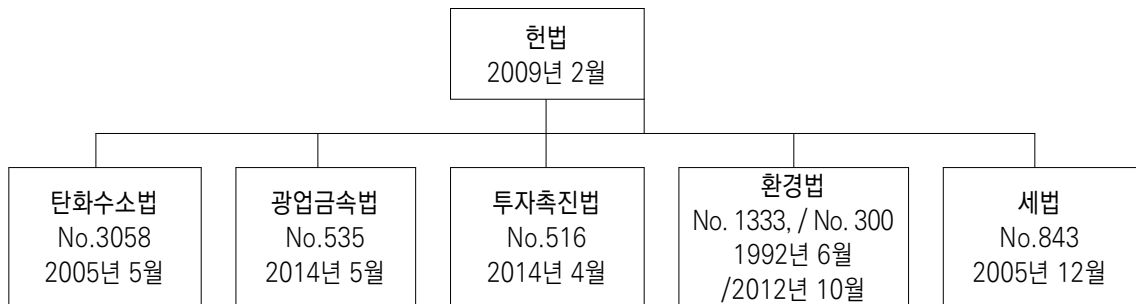


그림 3 | 볼리비아 자원개발제도 관련 주요 법률구성

1. 헌법

2009년 2월 공포된 볼리비아 헌법 제349조에서는 볼리비아의 모든 부존자원의 주권은 볼리비아 국민이 소유하며, 국가는 공익을 위해 자원을 관리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제369조에서는 토양과 하층토에 존재하는 모든 광물자원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실질적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권리는 국민에게 있지만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계획되고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2편 제2장은 천연자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 천연자원의 소유와 양도 및 권리를 국가에 두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전략적 천연자원의 탐사, 채굴, 생산 및 판매의 정책 및 관리에 책임을 가지며, 공기업 등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기업 등은 기타 민간기업 등과 합작을 계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천연자원의 이용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는데, 국가는 해당 투자의 경제적 이익이 볼리비아 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모든 천연자원은 볼리비아 국민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외국기업 혹은 민간 볼리비아 기업

도 볼리비아 천연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주식시장에 등록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천연자원 소유에 대한 등기와 등록은 국가의 독점적 권한임을 선언한 것이다.

헌법 제2편 제3장 제359조에서 제368조까지는 탄화수소관련 규정이다.

이 장에서 탄화수소는 절대적으로 볼리비아 국민들의 소유임을 선언한다. 국가는 볼리비아 국민의 이름을 대표하여 국가의 모든 탄화수소 생산 소유권을 가지며, 탄화수소의 상업화의 유일한 담당자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탄화수소의 판매로 얻은 수익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탄화수소 정책과 관련하여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 (YPFB, Yacimientos Petroliferos Fiscales Bolivianos)가 공적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한편, YPFB가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탄화수소의 생산 및 판매의 전 활동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임을 선언한다. YPFB는 또한 국가를 대표하여 관련지역 국가영토 소유권을 운영하며 실행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탄화수소 생산과정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모든 외국기업은 법률과 당국에 명시된 볼리비아 통치권에 따라야 함을 선언하였다. 그 어떤 외국 사법적 경우도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사회 중재의 경우 및 외교적 항의에 호소 등 예외적 상황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다.

헌법 제2편 제4장 제369조에서 제372조까지는 광업관련 규정이다.

이 장에서 국가는 법에 규정된 모든 볼리비아 광물자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민간 광업산업 및 기업은 국가 광산산업의 생산 참여자로 인정 된다.

광물 및 금속 정책의 방향은 국가의 책임이며, 광업활동에 대한 양성, 증진 및 관리 또한 국가에 귀속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는 광물 생산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활동과 광업권리의 명시, 계약에 대해서도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2. 탄화수소법

1) 개요

볼리비아의 탄화수소법은 많은 변경이 있어왔다. 1990년대 자본화법을 통해 국영석유회사가 매각되며 실질적으로 민영화되었던 탄화수소 부문은 2006년 모랄레스 정부의 등장과 함께 재국영화 되었다. 정부는 2006년 5월 1일 최고행정명령 28701을 통해 탄화수소 자원을 국가 소유로 선언하고, 기존의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180일 안으로 재협상 혹은 정리할 것을 선언하여다.

이후 탄화수소에 대한 국가의 관리는 국영석유회사를 통해서만 탄화수소 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탄화수소 직접세 신설을 통해 세금을 강화하는 등 외국기업의 참여와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2) 탄화수소법의 전체 구성

표 6 탄화수소법 구성

탄화수소법(Law No. 3058)	
제1편	탄화수소법의 범위 및 국민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범위(1조) • 제2장 국민투표(2조-8조)
제2편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정책과 원칙(9조-15조) • 제2장 탄화수소 소유와 정책 시행(16조-19조) • 제3장 탄화수소 담당 조직(20조-27조) • 제4장 금지 및 무자격(28조-30조)
	탄화수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탄화수소 활동과 표면조사(31조-33조) • 제2장 탐사 및 채굴(34조-46조)
제4편	특허, 로열티, 특별세 및 조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특허(47조-51조) • 제2장 로열티, 특별세 및 조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절 - 로열티, 특별세(52조) - 2절 - 탄화수소 직접세(53조-57조) - 3절 - 조세제도(58조-64조)
	석유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65조-66조) • 제2장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합작계약 공통조항(67조-71조) • 제3장 공동생산 계약의 특별조건(72조-76조) • 제4장 운영계약에 대한 특별조건(77조-80조) • 제5장 합작계약의 특별조건(81조-84조)
	정제 및 제련물의 상업화와 천연가스 수송 및 분배
제6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정제물의 상업화(85조-88조) • 제2장 국내시장 상업화(89조-90조)

탄화수소법(Law No. 30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장 가스관을 통한 탄화수소 수송(91조-97조) • 제4장 정제 및 산업화(98조-102조) • 제5장 저장(103조) • 제6장 천연가스의 분배(104조-108조) • 제7장 공공서비스 원칙(109조-113조)
제7편	농민, 원주민 및 토착민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농민, 원주민 및 토착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권(114조-118조) • 제2장 보상 및 배상(119조-120조) • 제3장 성지 및 자연문화 보존지역의 불가침(121조-127조) • 제4장 지역권(128조)
제8편	탄화수소 활동, 환경 및 천연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탄화수소활동, 환경 및 천연자원(129조-131조) • 제2장 신성 지역 및 자연적·문화적 가치 광구(132조-137조)
제9편	정의(138조)
제10편	가스의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발전을 위한 가스 추출 서비스 계약(139조-144조)
부칙	
종칙	

3) 탄화수소 자원(천연가스 및 석유) 소유권

2005년 탄화수소법 (Law No. 3058)과 2006년 최고행정명령 28701 및 2009년 헌법을 통해 원칙적으로 탄화수소 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탄화수소와 관련 된 모든 소유권에 대한 역할은 국영석유회사를 통해 실행함을 규정하고 있다.

탄화수소법 제5조는 볼리비아 영토 내의 모든 탄화수소 유전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 국영석유회사(YPF)를 통해 그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 이전에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 채굴, 및 판매활동을 계약한 면허권자들은 법 발효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계약을 변경하도록 요구 받았다.

또한 탄화수소법 제16조에서는 헌법 제359조와 일관되게, 탄화수소의 소유 권리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소멸하지 않는 소유권은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국가의 지배권하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민간개발업자(내국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는 국영석유회사 YPF와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서비스 계약, 합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탄화수소 자원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4) 탄화수소 자원(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활동의 범위와 참여

탄화수소법 제31조에 따라 탄화수소 활동은 탐사, 채굴, 정제 및 산업화, 운송 및 저장, 상업화, 천연 가스 배분으로 정의된다. 탄화수소법 제17조에 따라 탄화수소 자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이 단독으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으며, 국영석유회사 YPFB와의 계약 및 합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탐사기간에 대하여 탄화수소법 제34조 및 제36조는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지의 성격을 유전확정지(Zona Tradicional)와 비유전 확정지(Zona No Tradicional)로 나누고, 유전확정지에 해당하는 광구의 경우는 7년을, 비유전 확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구역들에 대해서 YPFB와의 합작 혹은 제35조에 따라, YPFB가 선점한 광구를 제외하고는 국제입찰을 통해 선정되며, 탄화수소부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5) 계약방식

탄화수소법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광구의 상업성에 대한 보고 및 탐사광구 선정이 이루어진 경우, YPFB가 선점한 광구를 제외하고 국제입찰에 공지된 토지를 낙찰 받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탐사를 통해 상업적 자원 개발을 승인 받은 후에는 YPFB에 보고하고 2년 안으로 광구 발전 계획안을 제출하면 탐사광구에 대한 채굴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65조는 YPFB와 탐사와 채굴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은 40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은 YPFB와 탄화수소부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혹은 부분, 직·간접적으로 계약을 양도, 이전 및 승계할 수 없다. 한편,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 공기업, 민간기업 등 어떠한 형태이든지 볼리비아 국영석유회사 YPFB와 탄화수소 자원의 탐사와 생산 활동에 대해 공동생산 계약, 운영계약, 합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67조에 명시된 회사 연혁, 볼리비아 내 지사 설립, 분쟁해결 제도에 대하여 외교적 방법을 통한 모든 이의제기를 포기할 것 등의 필수사항을 완성한 후 진행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계약에 대한 무효 처분이 가능하다.

계약의 필수 조항(제67조)

- a) 회사 연혁
- b) 계약의 일부, 능력 및 대리인(법인)
- c) 목적과 기간
- d)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계약 완성보증. 자회사 및 제휴회사의 경우 본사의 보증. 탐사 작업량 이행관련 재정 보증
- e) 광구번호의 표시를 통해 계약 지역과 위치 확립, 유정 확정지(Zona Tradicional)와 비유정 확정지(Zona No Tradicional)의 확인
- f) 탐사작업량과 그에 상응하는 재정
- g) 면허권자에 상응하는 보수와 지분
- h) 특허, 로열티, 특별세, 세금 및 연금제도
- i) 수학적 모델, 기타 방법 및 계약 대상과 관련한 그 어떤 방법을 통하여 기술, 경제, 상업, 매장지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출.
- j) 당사자들의 의무와 권리로 면허권자에게 생산물에 대한 상업권이 있으며, 국내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
- k) 계약된 의무의 불이행은 비연속 계약과 손해, 손실 제도의 근거
- l) 분쟁해결제도
- m) 계약의 양도, 이전 및 승계
- n) 환경법 내의 보호와 보존 관련 조항
- o) YPFB부터 직원 교육 등 노동, 복지, 국내 서비스를 이용
- p) 외교적 방법을 통한 모든 이의제기를 포기
- q) 볼리비아 내 지사 설립과 보고

공동생산, 운영계약, 합작계약과 변경은 정부의 허가와 승인이 필요하다.

생산물분배 계약과 관련하여 제72조부터 제76조를 통해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제72조를 보면, 국영석유회사 YPFB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탐사와 생산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계약권자가 부담하고, 최종산물에 대한 지분을 가진다. 이 경우 법에 명시된 로열티, 세금 및 법에 규정된 지분만큼은 공제 후 산정된다. 면허권자의 지분은 관련 계약에 따른다.

제73조는 공동생산 계약자가 출자한 투자에 대하여 생산물에 대한 지분배분 후 투자상환 비용을 결정하며, 반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제77조부터 제80조를 통해 그 계약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운영계약의 경우 제77조는 국영석유회사 YPFB는 투자하지 않고, 운영을 담당하는 계약자가 자본, 시설, 장비, 재료, 인력, 기술 및 기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지분을 독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와 계약에 관련한 위험과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80조에 따라 운영 계약자들의 실행은 국영석유회사 YPFB 및 정부기관에 의해 관리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6) 세제

탄화수소법에 명시된 탄화수소 자원개발에 따른 세금으로 특허료, 로열티, 탄화수소 직접세(IDH, 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가 있다. 각 단계를 보면, 세법(Law No. 843)에 따르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본 과세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따라서 탄화수소법 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세법과 특별조세는 부과되며, 자원개발 각 분야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비율은 차이가 있다.

볼리비아에서 활동하는 외국석유기업들은 탄화수소의 판매 및 수출과 관련하여 본사에 예치금 및 판매금을 직접 송금할 수 없다.

산업화 프로젝트, 가스관 네트워크, 국내 설비 및 에너지원 구성 변화에 대한 조세 등 특혜 (탄화수소법 제60조)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산업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갖는다.

- a) 탄화수소 사업을 위한 플랜트 설치 및 산업단지 건설과 더불어 국내 가스 설치를 위해 가스관을 건설하는 데 필요로 하는 상품, 장비, 물질, 기계 및 그 외의 부품은 설비시설이 완성될 때까지 수입에 대한 물품의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면제
- b) 운영되는 날로부터 8년 기간 동안 면세
- c) 천연가스 산업의 인프라 혹은 플랜트 건설을 위한 이용성이 존재할 때 공유지 사용에 대한 권한
- d) 연장 가능한 최소 5년 기간 동안으로 인프라 건설 산업에 대한 부동산세가 일시적 면제
- e) 천연가스 압축 자동화 단지의 에너지원 구성 변화를 위한 상품, 장비, 물질, 기계 및 그 외의 부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면제

7) 권리 해지 및 소멸

탄화수소법 제110조에 따르면, 규제청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행정 절차에서 양도, 라이선스 및 권한을 다음과 같은 이유와 탄화수소법 관련 규칙에 따라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a) 규제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양도, 라이선스 및 권한에 대한 내용과 기간 안에 작업과 설치를 시작하지 않고, 약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및 취소
- b) 양도, 라이선스 및 권한 목적의 변경과 의무 불이행 시
- c) 이 법, 규정 및 해당 계약의 불이행과 경고 통지를 받은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 d) 사전허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근무태만이 있을 때
- e) 공개 접근을 이행하지 않을 때
- f) 근무태만으로 기간과 약속된 구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프로그램 감사 시 시설 접근을 방해할 때
- g) 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을 완수하지 않고, 규칙 준수가 투철하지 않을 때
- h) 환경 접근에 대한 취소는 양도 계약 취소의 원인이 됨.
- i) 법적인 파산 선언 시

8) 분쟁 해결

YPFB와 분쟁이 생길 경우 헌법 제366조와 탄화수소법 제69조에 따라 볼리비아 국내법을 통하여 해결하며, 국제법 및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볼리비아는 2007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를 탈퇴하여, 투자분쟁의 경우 국제적인 수준이 아닌 국내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국 분쟁이 일어날 경우 국제적인 해결 과정은 불가능하며, 탄화수소법 제67조에 따라 외교적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는 포기되며, 볼리비아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투자법에 따라 분쟁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9) 직원 계약

탄화수소법 제15조에 따르면 이 법에 명시된 탄화수소 활동을 행사하고자 하는 기업의 외국인 직원은

15%가 넘을 수 없으며, 관리직, 기술직 및 현장근무 직원의 계약은 해당국에 따라 진행하지만, 볼리비아 노동법을 적용한다.

10) 탄화수소 자원지에 대한 농민, 원주민, 토착민의 권리

탄화수소법 제114조에서 제118조를 통해 탄화수소 개발지역이 농민, 원주민 및 토착민 거주지역에 분포될 경우 해당자들의 권리가 우선시되며,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보호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과 배상 범위를 설정한 제119조와 제120조를 통해 자원의 생산과 이용이 해당 지역의 농민, 원주민, 토착민 및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고 있다.

11) 환경규제

탄화수소법 제134조에 따르면 탄화수소 생산에 대한 일련의 모든 운영에 대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는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예방원칙에 따라 지속개발부와 보호지역 관리국(SERNAP), 탄화수소부는 탄화수소 매장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양도와 라이선스가 부여된 곳이 동시에 해당되는 지역이면 활동에 협력해야한다. 탄화수소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환경 손해, 피해의 치료와 자연환경 복구는 특별규제에 따른 보상이 적용된다.

한편, 제135조에서는 환경피해가 발생한 순간, 기업은 환경 행정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즉각적으로 환경피해 완화와 복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3. 광업금속법 (Law No. 535 De MINERÍA Y METALURGIA)

1) 개요

지난 2009년 2월 공포된 헌법에 따라 천연자원으로 정의되는 모든 형태의 광물, 탄화수소, 물, 공기, 토양 등은 국가발전을 목표로 한 전략적 공공이익의 성질을 갖게 되었다. 특히 지난 시기 볼리비아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광물자원에 대하여 광업권 및 조세를 통해 국가의 통제를 강화시켰다.

헌법에 따라 광물자원은 국민 주권의 개념이며, 국가는 광물자원에 관하여 광업·금속 정책을 정하고, 광업을 진행, 촉진, 관리하는 책임과 광업 전체 생산 프로세스, 광업권자의 활동, 광업 계약 및 기타 광업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는 등 그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광업권과 광업 발전에 따른 일련의 모든 생산 과정에 대해서는 2014년에 제정된 광업금속법(Law No. 535)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광업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은 광물 채굴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규를 따른다.

2) 법의 전체 구성

2014년 제정된 볼리비아 신 광업금속법(Law No. 535)은 총 7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7 ▮ 광업금속법의 구성

광업금속법(Law No. 535)	
제1편	총칙
	• 제1장 목적, 소유권 범위(1조-4조)
	• 제2장 원칙 및 정의(5조-7조)
	• 제3장 주요 조항(8조-23조)
	• 제4장 광업지역(24조-28조)
• 제5장 주체 및 광업생산업자(29조-35조)	
제2편	국영 광업부문의 구조
	• 제1장 기관 및 회사(36조)
	• 제2장 권한 및 기능(37조-38조)
	• 제3장 광업행정청(AJAM) 39조-60조)
	• 제4장 광산공기업(61조-78조): COMIBOL 외
	• 제5장 광산물 등록 관리(79조-89조)
• 제6장 광산재정기금(90조-91조)	
제3편	광업권 및 소멸
	• 제1장 광업권(92조-113조)
	• 제2장 광업권의 소멸(114조-126조)
• 제3장 광업협동조합(127조-130조)	
제4편	광업 계약, 채광 및 탐사 면허
	• 제1장 광업 계약(131조-138조)
	• 제2장 광업 계약관련 필요 사항(139조-144조)
	• 제3장 광업 협회 계약(145조-153조)
• 제4장 채광 및 탐사 면허(154조-163조)	

광업금속법(Law No. 5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장 채광 및 탐사 면허 갱신(164조-170조) • 제6장 영업 면허 및 판매(171조-184조)
제5편	운영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광업행정 일반규칙(185조-190조) • 제2장 민간광산업자 계약(191조-196조) • 제3장 합작계약(197조-198조) • 제4장 국영광산기업(COMIBOL)의 운영(199조-201조) • 제5장 기타 등록(202조-204조) • 제6장 행정절차(205조-206조)
	광업계약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207조-209조) • 제2장 절차(210조-216조) • 제3장 환경(217조-222조)
	광업로열티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광업로열티(223조-229조) • 제2장 광업특허료(230조-234조)
	부칙
종칙	

제1편은 광물의 소유와 광업권의 주체에 대해, 제2편에서는 광업부문 관련 기관 및 구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광업권 및 소멸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제4편에서는 광업 계약, 채광 및 탐사 면허를 다루고 있다. 제5편, 6편에서는 광업 관련 계약 및 운영제도를 다루고 있으며, 제7편에서는 광업 로열티와 광업특허료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3) 광업권의 소유와 범위

2014년에 제정된 광업금속법 제2조를 통해 볼리비아 영토 내에 있는 모든 금속 및 광물 자원에 대한 소유를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는 자연인, 법인 및 사기업, 공기업, 볼리비아인, 외국인 및 외국기업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광업권을 획득하여 광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유와 광업권을 구별하였다. 이는 2009년 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업권에 대하여 국가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전체 생산 프로세스에서 광업권을 부여하고 자연인 혹은 법인과 광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볼리비아는 광업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하는 광업권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광업금속법 제2조에서 볼리비아는 광물에 대한 권한을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광물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는 광업권자에게 두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광산운영 계약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고, 만약 기간연장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원 계약 만료 일 6개월 이내에 관련서류와 함께 재 신청하여야 한다(제142조). 탐사권에 대한 면허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광업행정청(AJAM)의 승인하에 3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제159조).

광산운영 계약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한다. (제143조)

- a) 배경
- b) 계약당사자의 대리인 및 법인등록
- c) 볼리비아내 사업장 주소
- d) 광산 지역 및 위치
- e) 부여된 광업권의 목적 및 식별
- f) 생산 및 투자 계획
- g) 생산 및 투자 계획의 모니터링 및 준수사항
- h) 관련 법의 조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사항
- i)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및 보전, 노동 및 산업 안전기준 준수, 내국인 우선 고용기준 준수, 국내 상품 및 서비스 우선 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

4) 광업활동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

볼리비아 광업활동에 대한 과세의 종류는 크게 광업로열티, 광업특허료, 법인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광업 로열티(RM, Regalia Minera)

광업 로열티(RM: Regalia Minera)는 천연자원 채굴에 대한 보상의 형식으로 적용되어 징수되는 특별세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광업로열티는 광물의 생산 및 이를 이용한 제련 등 가공에 대하여 부과된다.

한편 볼리비아 정부는 제련 공정 등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련, 제련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로열티의 60%만을 부과한다.

광업 로열티(RM)는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되며, 매출액은 [정광 혹은 금속중량×공식가격]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공식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LME) 혹은 기타 국제금속시장이나 국제적으로 인지도된 금속가격에 대한 출판물 등으로 표시되는 매일의 최저 거래가격으로 광물의 공식가격(CO)을 정하고, 그 가격을 토대로 정부가 산출하는 평균값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 광물 판매총액에 배수하여 로열티를 징수한다.

광업금속법 제227조는 금속 및 광물 자원에 대한 광업 로열티의 적용률을 17개의 광종(금, 유황광물, 은, 아연, 납, 주석, 안티몬, 텅스텐, 구리, 비스무트, 철, 붕소 등)에 대하여 고정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7개의 광종을 제외한 기타 금속 및 광물에 대하여는 제227조에 따라 총 판매수입의 2.5%로 정한다.

표 8 | 광종별 로열티(제227조)

1	자연상태의 금 (Onza Troy)	공시가격(USD)	적용률(%)
		700 초과	7
		400 ~ 700	0.01(CO)
		400 미만	4
2	유황광물에서 나오는 금 (Onza Troy)	공시가격(USD)	적용률(%)
		700 초과	5
		400 ~ 700	0.00667 + 0.33333
		400 미만	3
3	자연 또는 소규모 광산에서 나오는 금 (Onza Troy)	공시가격(USD)	적용률(%)
		700 초과	2.5
		400 ~ 700	0.005(CO) - 1
		400 미만	1
4	은 (Onza Troy)	공시가격(USD)	적용률(%)
		8 초과	6
		4 ~ 8	0.75(CO)
		4 미만	3
5	아연 (Libra Fina)	공시가격(USD)	적용률(%)
		0.94 초과	5
		0.475 ~ 0.94	8.60215 - 3.08602
		0.475 미만	1

6	납 (Libra Fina)	공시가격(USD)	적용률(%)
		0.6 초과	5
		0.3 ~ 0.6	13.33333(CO) - 3
		0.3 미만	1
7	주석 (Libra Fina)	공시가격(USD)	적용률(%)
		5 초과	5
		2.5 ~ 5	1.6(CO) - 3
		2.5 미만	1
8	안티몬 (TMF)	공시가격(USD)	적용률(%)
		3.8 초과	5
		1.5 ~ 3.8	0.0017391(CO)-1.6087
		1.5 미만	1
9	볼프람 (TMF)	공시가격(USD)	적용률(%)
		24 초과	5
		8 ~ 24	0.00025(CO) - 1
		8 미만	1
10	구리 (Libra Fina)	공시가격(USD)	적용률(%)
		2 초과	5
		0.7 ~ 2	3.0769(CO) - 1.1538
		0.7 미만	1
11	비스무트 (Libra Fina)	공시가격(USD)	적용률(%)
		10 초과	5
		3.5 ~ 10	0.61538(CO)-1.15385
		3.5 미만	1
12	철광석	변환 정도	적용률(%)
		Concentrados y Lumps	4
		Pellets(작은 덩어리)	3
		Hierro esponja y arrabio(선철)	2
13	석회암, 중정석, 탄탈륨	금속종류	적용률(%)
		Tantalita(탄탈륨)	3.5
		Baritina(중정석)	3.5
		Caliza(석회암)	3.5

14	보석 또는 준보석	원석의 종류	적용률(%)
		준보석	4
		보석 및 금속	5
15	인듐 및 레늄주)	공시가격(USD)	적용률(%)
		인듐	5
		레늄	5
16	증발 자원	공시가격(USD)	적용률(%)
		리튬 탄산염	3
		염화칼륨	3
		기타 부산물과 파생물	3
		염화나트륨	2.5
17	붕소	공시가격(USD)	적용률(%)
		가공되지 않은 올렉사이트	5
		연소시킨 올렉사이트	3

주) 인듐 및 레늄의 경우는 국가의 광물 및 금속의 상업화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SENARECOM)이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규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형태 및 상황에 따라 광업 로열티가 적용된다.

이러한 광업로열티는 85%는 주 정부에, 15%는 지방정부에 귀속된다(제229조).

(2) 광업특허료(Patente Minera)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스쿼어로 구성된 광업권의 소유자가 매년(1~12월) 지불해야 하는 특허료로서 광업권이 등록된 연월 경과에 따라 다른 계산 방식이 적용되어 추정된다.

광업금속법 제230조에 따르면 탐사단계는 325Bs/년(스쿼어), 개발단계는 50,000 Bs/년(면허당), 생산단계는 400 Bs/년(30 스쿼어까지), 500 Bs/년(31~40 스쿼어), 600 Bs/년(41스쿼어이상)으로 계산되어 부과된다.

이 광업특허료는 그 성격상 법인소득세가 아니라 대가의 형식이므로, 볼리비아 세제에서 법인세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3) 법인세

법인세(Impuesto al Utilidades de las Empresas)는 세법(Law No. 843)에 따라 세의 한 종류로서 볼리비아 영토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공적·사적·사회적 기업 등의 모든 법인은 소득을 측정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5) 광업권의 소멸

볼리비아 광업금속법 제163조에 따르면, 면허획득 이후 1년이내 활동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2회이상 연속으로 정부보고를 누락하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4. 투자촉진법

1) 개요

볼리비아는 2014년 4월 투자촉진법(Law No. 516 de Promocion Inversiones)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천연자원개발을 포함한 볼리비아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투자에 대해서 국가는 투자자에게 투자인센티브(세금감면, 관세 조정 등)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인센티브 부여절차는 해당 정부기관(탄화수소 에너지부: Ministerio de Hidrocarburo y Energía/광업금속부: Ministerio de Minería y Metalurgia)이 기획개발부(the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에 인센티브 부여를 신청하고 기획개발부는 이를 심의한 후 각료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최고행정명령(Supreme Decree)의 형식으로 최종 부여하게 된다.

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의 투자에 대해 국내인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있다. 한편, 볼리비아의 투자촉진법은 국내·외 투자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명시하며 그 세부적 투자 상황은 탄화수소 및 광물 자원 관련법에 명시된 법 조항을 따라야 한다.

탄화수소 자원의 경우 탄화수소법(Law No. 3058)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그 허용범위와 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며, YPFB를 통한 용역 계약, 서비스 계약 등의 제한적 투자 계약을 진행한다. 금속 및

광물 자원의 경우는 광업금속법(Law No. 535)에 명시된 투자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2014년 투자촉진법에서 정부는 3개월 이내에 핵심분야(key sector)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정 및 중재법(arbitration law)를 실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제정되고 있지 않다.

5. 환경법

볼리비아의 환경법은 1992년 제정(No. 1333)되고 2000년 개정되었다. 한편, 2012년 Mother Earth Law(Supreme Decree 71, Law No. 300)가 추가되었다.

볼리비아의 환경법은 환경보호의 목적 및 토지, 공기, 물, 동식물, 천연자원 등의 보호와 인간생활의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주이다.

자원개발은 지상과 지하 및 그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탄화수소법과 광업금속법 내에는 환경규제가 포함된다. 다만, 환경법 범위 내에서도 자원개발 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표 9 | 환경법(Law No. 1333) 주요 조항들⁸⁾

제4편 일반적인 천연자원	
제10장 비재생성 천연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68 조 : 모든 비재생성 자원은 지하나 지표에 존재하는 광상의 출처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천적으로 국가소유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69 조 : 본 법률의 목적을 위해, 원천적으로 비재생성 상태이고 인간의 활동 혹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양적으로 고갈되기 쉬운 물질을 비재생성 천연자원이라고 이해한다. 비재생성 천연자원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금속광물 및 비금속광물, 각기 다른 상태의 탄화수소가 그것이다.
제11장 광물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70 조 : 광물자원의 채광은 원자재의 통합적 활용, 폐기물질 처리, 광미, 복구 작업, 벌채에 대한 시행령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광상의 국가적 이용을 고려하며 개발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71 조 : 광물 추출작업 시, 작업 중 그리고 작업 후에 부식 방지 및 관리, 토지의 안정화, 수질, 해류 및 온천수 보호를 위해 활용지역을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 제 72 조 : 광업부는 국가환경청과의 협력하에 광업활동의 다양한 행동 및 효과를 위해 허용한계치를 규정하는 해당기술규칙을 제정한다
제12장 에너지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73 조 : 에너지 자원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에너지 자원은 환경보전 시행령 하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YPFB 및 다른 회사가 실행하는 석유 기반 활동은 모든 단계에서 오염, 산림벌채, 부식, 침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환경적 방책 및 야생 동 식물 군, 천연자원환경 및 보호지역의 보호를 집중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석유 방류 및 기타 오염 생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우발사고 예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8) 볼리비아 환경법. 세계법제정보센터/한국자원정보서비스

하지만, 볼리비아 환경법 내에서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환경규제 및 환경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탄화수소법과 광업금속법 내에 명시된 환경규제 조항을 참고해야 한다.

6. 조세제도

1) 법인세

볼리비아의 모든 기업은 25 %의 법인세(CIT, Corporate Income Tax) 과세대상이다. 이는 볼리비아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세무조정사항(조세 법률과 규정 요구 사항에 따라 세무 목적을 위해 조정된 (예, 손금불산입 및 비과세 항목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볼리비아는 '소득 원천' 원칙(예를 들어 지역 기반)에 따라 기업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즉, 볼리비아 영내에 위치한 재화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볼리비아 원천 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러한 소득이 발생하는 데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국적/거주지 또는 계약이 성사된 장소와 관계없이 그 소득은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1) 채굴활동 관련 추가법인세(Surtax on extractive activities)

천연 자원(광물과 석유/가스)의 채굴 활동과 관련해서 25%의 추가법인세가 있다. 이 추가법인세는 하기 두 추가 공제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법인세와 같은 과세표준으로 계산된다.

- (i) 1991년 기준 누적 투자액의 33% 한도
- (ii) 각 채굴 사업(예를 들어, 채광 지역 또는 현장) 당 250 백만 볼리비아노(화폐단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채굴 사업 총 수입의 45%

(2) 광산기업의 특별세(Special taxes on mining companies)

25%의 일반 법인세와 채굴 활동에 대한 25% 추가법인세 이외에도, 모든 광산 회사는 다음 세율에 따라 과세대상 순이익에 의해 계산된 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 광산회사가 채굴 활동을 하는 경우, 12.5%

- 광산회사가 원재료에 가치를 부가하는 제조 활동을 하는 경우, 7.5%

광산회사는 또한 총 매출액에 대하여 1~7% (광물의 종류에 따라)의 채굴 로열티의 대상이 된다. 만약 그 광물이 볼리비아 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채굴 로열티 60% 할인이 존재한다.

공식적인 광물 가격이 세법에 정해진 가격보다 낮을 경우 채굴 로열티는 법인세와 상계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불된 채굴 로열티는 법인세 목적상 공제될 수 없다. 대조적으로, 공식적인 광물 가격이 세법에서 정하는 가격보다 높다면, 채굴 로열티는 공제는 법인세 상 손금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세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광물이나 금속에 대하여 지불된 채굴 로열티는 항상 법인세과세표준 산정시 상계될 수 있다.

(3) 거래세(Tax on gross income)

총 수입에 대한 세금(일명 ‘거래세’)은 일반적으로 (비영리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경제적 또는 상업적 활동의 성과로부터 발생된 총 수입에 대하여 매 달 3%의 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증권거래법에 의해 규정된)투자의 매각과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광물, 원유, 가스의 경우 그 판매(매각)가 수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사항들이 존재한다.

기업은 법인세와 거래세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납부되고, 거래세의 선불로 간주되면서 매달 납부한다. 만약 연중 누적 월별 거래세 납부 금액이 법인세 선납금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는 그 과세연도 말까지 월 기준으로 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기업이 2014 회계연도 법인세를 2015년 4월에 납부한다면, 이 납부금은 2015년 5월과 2016년 4월 사이의 거래세 납부금액에 대한 선납금으로 간주된다.

(4) 지방소득세(Local income taxes)

볼리비아에 지방소득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2) 거주자

기업이 볼리비아 내에서 설립된 경우 그 기업은 볼리비아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고정 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볼리비아 상법은 외국기업이 고정사업장 설립 없이 독립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기업은 자회사나 지사 등의 설립을 통하여 일상의 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볼리비아 법에는 어떠한 상황에서 고정사업장이 되며, '일상의 상업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3) 기타 세금

(1) 부가가치세 (VAT)

부가가치세는 최종 수입품을 포함한 볼리비아 영토 내에서 발생한 물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13%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 부가세는 최종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14.94%(13%/87%)이다.

(2) 관세

최종 수입품은 소비재와 자본자산에 대하여 각각 10%와 5%의 관세 과세대상이다. 관세는 볼리비아 관세 법령에 따라 운송, 보험비용을 포함한 물품의 '거래 가격'에 대하여 부과된다.

(3) 탄화수소에 대한 직접세

탄화수소에 대한 직접세(IDH, 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는 수원지점에서 측정된 탄화수소의 생산(량)에 대해 32%의 세율로 부과된다. 총 산물 가격 결정은 탄화수소법 제56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통과하여 나온 최종산물이 국내시장에 판매될 경우와 수출의 경우 가격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세총액은 상품의 양과 가격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결정된다.

(4) 양도세

자산 및 부동산의 양도는 3%의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세금은 거래세(총수입에 대한 세금)를 위해 제시된 공급량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하고 그 소유물이나 부동산이 등록된 지방정부에 의해 징수된다.

4) 지점소득 및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

지점 소득은 다른 유형의 볼리비아 기업에 적용되는 동일한 세금의 과세대상이 된다(법인세율 25%). 하지만, 볼리비아 지점의 순이익은 매년 법인세 신고기한(예를 들어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20일)에 본사에 배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볼리비아 지점은 그러한 간주 배분 이익에 대하여 1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본사가 볼리비아 지점의 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볼리비아 자회사의 본사에 대한 이익 배분, 이자 지급, 로열티 지불, 모든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2.5%의 원천세 대상이 된다.

5) 세무 행정 일반

(1) 과세 기간

과세 기간은 회계연도이다. 회계연도는 그 기업의 영업 활동에 따라 다르다. 보통 은행과 유통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은 12월 31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고 있다. 제조업, 석유, 가스회사는 보통 3월 31일, 농업과 산림업은 6월 30일, 광산업은 보통 9월 30일로 정하고 있다.

(2) 세무신고

일반적으로 세무신고는 회사가 직접 수행하고,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후이다. 세무신고서는 감사 받은 재무제표(해당하는 경우)와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보조적인 세무 정보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3) 세금납부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20일 이내에 연 1회 납부한다. 그러나 광산회사의 경우 12.5%/7.5%의 추가법인세와 함께 월 단위로 선납한다.

표 10 | 볼리비아 일반세제⁹⁾

Tax or mandatory contribution	Payments (number)	Notes on Payments	Time(hours)	Statutory tax rate	Tax base	Total tax rate (% profit)	Notes on TTR
Transactions tax	12			3%	Sales	60.96	
Employer paid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12		507	16.71%	Gross salaries	18.85	
Corporate income tax	1		110	25%	Taxable profit	3.20	Not included
Property transfer tax	1			3%	Sale price	1.82	
Property tax	1			Various rates	Property value	1.65	
Municipal license tax	1			Various rates		0.28	
Vehicle tax	1			Various rates	Vehicle value	0.13	
Tax on bank transactions	1			0.015%	Bank transactions	0.01	Withheld
Value added tax(VAT)	12		408	13%	Value added	0.00	Not included
Employee paid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0	Paid jointly		12.71%	Gross salaries	0.00	withheld
Totals	0		1025.0			83.68	

특허료는 볼리비아 국가 조세법에 따른 법인세와 국세의 개념은 아니지만, 지하자원을 개발할 때 지표 표면에 대한 손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자에게 부과된다. 명시된 활동들에 대한 세금과 는 계약 등록시작일로부터 매년 지불해야 하는 별도로 탄화수소법 제47조에 정의되어있다.

탄화수소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계약자는 제48조에 따라 특허료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로 국영석유회사 YPF에 지불해야 한다. 탄화수소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계약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와 특별세 및 탄화수소 직접세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탄화수소 생산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제52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통과한 생산물에 대하여 로열 티와 특별세는 각각 생산물의 산지에 해당하는 도에 지불하는 11%의 로열티, 베니(Beni) 주와 판도 (Pando) 주를 위한 로열티 1%, 재무부에 대한 6%의 특별세의 비율로 부과된다.

탄화수소 직접세(IDH)는 탄화수소물 생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제54조와 제55조에 따라 볼리비아의 국토 내의 탄화수소물을 생산하는 개인, 법인, 공기업, 사기업에게 부과하며, 유정에서 탄화수소물을 추 출하여 품질검사를 통과하는 총산물의 32%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총 산물 가격 결정은 제56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통과하여 나온 최종산물이 국내시장에 판매될 경우와 수출의 경우 가격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세총액은 상품의 양과 가격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결정된다.

9) World Bank Group. <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conomies/bolivia/paying-taxes/>

볼리비아에서 활동하는 모든 법인과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 25%와 부가가치세 13%는 조세법에 따라 부과된다. 단 탄화수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플랜트에 필요한 장비, 상품, 부품에 대하여 플랜트 설치가 완성될 때까지 탄화수소법 제6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면세된다.

VI. 투자사례 검토

1. 인도 JSPL의 El Mutun 광산투자

1) 개요

2006년 인도의 JSPL사와 모랄레스 정부는 El Mutun 광산 개발과 철강을 수출하기 위한 Puerto Suarez 하향 근처에 제철소 설립을 위한 21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합의했다. 브라질 국경과 근접한 볼리비아에서 남동쪽으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El Mutun은 약 400억 톤의 세계 최고의 철광석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l Mutun 광산투자는 원래 2007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2014년 까지 철광석 광산개발, 가공 및 철강설비, 인프라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JSPL은 2012년 7월 합작사업을 철회하였다.

2) 경과

최초 광업권 입찰 시, 볼리비아 정부는 광산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국 내 철강설비 건설을 요구하였는데, Arcelor Mittal의 경우 볼리비아 정부의 요구사항이 무리하다고 판단하여 입찰 포기했었다. 그에 반하여 JSPL은 총 USD 21억불 규모의 투자 계획을 볼리비아 정부에 제시하였다.

이후 볼리비아 정부는 합작사업 계약에서 약속했던 부지와 천연가스 제공을 여러 차례 번복하면서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JSPL은 2006년 6월에 정부로부터 El Mutun 광산의 광업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프로젝트 계약을 2007년 7월에서야 체결하였으며, 광산 탐사는 2010년에 시작했다.

정부는 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출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하루 천연가스 10백만 m^3 를 제공한다고 약속했으나, 2014년부터 하루에 250만 m^3 만을 제공하겠다고 변경하였다.

JSPL 또한 투자 초기 2년간 총 USD 6억불을 투자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 투자는 그에 못 미쳤다. JSPL은 경기 침체 및 볼리비아 내 물류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부족을 들어 일정 연기 및 생산량 감축(철강생산 40%, 철광석 생산 20% 감축)을 제안하였으나, 협상에 실패하였다.

결국 JSPL은 2012년 7월 합작사업을 철회하게 되었다.

위의 사례는 볼리비아에 대한 관련 인프라 여건 파악, 건설 및 환경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투자를 기획한 경우, 정부의 성향에 따른 위험 분석의 중요성 및 한편, 분쟁 발생시 정부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직접 대화 채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Bolivia Company Laws and Regulations Handbook, 2015, Global Investment Center, USA
- The Investment Promotion Law of Bolivia, 2014, Luis Francisco Valle Velasco
- Gas&Desarrollo (Análisis y perspectivas)외 , 2014, YPFB
- Bolivia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2015, US Department of State
- Bolivia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2014, US Department of State
-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2011) (정경원, 조희문, 문남권, 유통재)
- 광산투자 실패에서 배운다, 2012, POSRI 보고서
- Worldwide Tax summaries Corporate Taxes, 2015/16, PWC
- 볼리비아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법제 정보, 2015,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 Jindal sees end of contract at Bolivia's El Mutun project, SBB 2012.7
- Jindal terminates contract for Bolivian iron and steel works, SBB 2012.7
-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이행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사회연구원 (김세원, 김종섭, 이은석)
- 볼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볼리비아 경제지표, 2014, 한국수출입은행 <http://keri.koreaexim.go.kr>
- 201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볼리비아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 볼리비아 광업관련 정책 및 제도 외, 2015, 한국광물자원공사
- 볼리비아 탄화수소에너지부 - <http://www2.hidrocarburos.gob.bo/>
- Agencia Nacional de Hidrocarburos - <http://www.anh.gov.bo>
- YPFB - <http://www.ypfb.gov.bo>
- 볼리비아 광업금속부 - <http://www.mineria.gob.bo>
- AJAM - <http://www.autoridadadminera.gob.bo>
- COMIBOL - <http://www.comibol.gob.co>
- World Bank Group. <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economies/bolivia/paying-taxes/>
- VICEPRESIDENCIA DE ADMINISTRACION, CONTRATOS Y FISCALIZACION INFORME DE
ACTIVIDADES, ENERO - JUNIO 2012, YPFB